

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946
----------	-----

제 안 년 월 일 : 2023년 07월 03일

발 의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박성연 의원이 2023년 5월 26일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751)과 서울특별시장이 2023년 5월 30일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877)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(2023. 7. 3.)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,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‘위원구성협의체’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특정성(性)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)
- 위원구성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(안 제4조의2 제4항부터 제6항)
-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4조의3)

##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제목 중 “자치경찰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라 하고, 내용 중 “서울특별시 자치 경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**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,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

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, 위원회 위원 구성이

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.

-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-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4조의3(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)**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.</p> <p>③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3조(<u>자치경찰위원회</u>의 설치 및 기능)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③ <u>위원회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제3조(<u>위원회</u>의 설치 및 기능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 <u>위원회</u>-----.</p> <p>제4조의2(<u>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</u>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<u>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</u></p>

현행	개정안
<신설>	<p><u>위원구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<신설>	<p>③ <u>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,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.</u></p>
<신설>	<p>④ <u>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,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<신설>	<p>⑤ <u>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</u></p>
<신설>	<p>⑥ <u>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·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신설>	<p>⑦ <u>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
<신설>	<p>⑧ <u>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72 367 322 405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72 689 783 969">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별표 5 및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 data-bbox="858 286 1278 324"><u>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365 1426 405"><u>제4조의3(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)</u></p> <p data-bbox="850 425 1426 645"><u>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 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810 689 1414 969">제11조(위원의 수당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----- -----.</p>